

대구대학교와 기상청과의 연구개발 · 교육에 관한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기상청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정보통신 분야와 기상분야의 전문인력 및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시설을 공동활용하고, 기상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개발 · 교육사업의 발전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공동추진 하기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협약의 범위 : 대구대학교와 기상청은 아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약한다.

- 기상정보분야 관 · 학 · 연 · 산 공동연구 개발체제 구축
- 기상정보시스템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모색
- 전문인력의 협력 및 교류방안 강구
- 교육지원 및 상호협력 증진
-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
- 기자재의 공동활용 극대화 노력

제2조 기상정보시스템 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의 설치 및 기능

- ① 대구대학교와 기상청은 대학 내에 센터를 설치 · 운영하고, 대구대학교와 기상청은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 한다.
- ② 센터의 기능은 기상정보처리시스템 연구, 원격측정시스템 연구, 기상측기의 국산화 개발 등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및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 한다.

제3조 인력활용 협력

- ① 기상청은 필요시 센터에 공동연구원을 파견하여 연구개발 활동 등에 참여한다.
- ② 대구대학교와 기상청은 필요시 소속교수 및 연구관을 상호 겸직하여 활용토록 한다.

제4조 교육협력 : 대구대학교는 산업정보대학원에 기상정보시스템공학 전공과정을 설치하여 기상청 기상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.

제5조 공동연구사업 수행 : 기상정보시스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공동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연구·학술활동과 국제협력을 병행 추진한다.

제6조 예산의 확보

- ① 기상청은 센터의 공동연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, 대구대학교는 필요한 일정 예산을 지원한다.
- ② 대구대학교는 센터의 연구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, 통신 등의 시설제공과 인력의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.

제7조 기타

-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필요시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이 협약은 2부씩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
이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의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1998년 9월 11일

박운호

대구대학교

총장 박운호

문승의

기상청

청장 문승의